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SIGHT: Seven Aspects of Transfer Pricing in Thailand
\(Bloomberg Tax Transfer Pricing Report – Jan. 08, 2019, by Jack Sheehan, Jonathan Blaine, and Patipan Kongviriyagit\)](#)

태국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7가지 측면

다국적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룹 내 관계사 간 거래("특수관계거래")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특수관계거래는 일반적으로 다른 과세권으로 소득을 이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태국 정부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 국세청(Thai Revenue Department, "TRD")은 특수관계거래로 인해 초래되는 소득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법률을 도입하고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TRD는 Thai Revenue Cord No.47("TRC47")의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 규정준수 및 집행 체계를 한 단계 더 강화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발표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
21 January 2019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김태준 상무이사](#)

(Tel: 02-2112-0696)

and Profit Shifting, "BEPS") Actions를 기반으로 하여, TP 남용 및 기타 세제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들을 마련했습니다.

태국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느린 국가 중 하나였으나, 금번 TRC47 개정으로 인해 TP 문서화가 의무화되고 미준수 시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TP 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RD는 투명한 과세를 위하여 독립기업원칙과 같은 TP 규정의 핵심 요소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문서화 요건은 현재 필수적인 세무서식을 포함하여 내국세법에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을 정의하고, 부과되는 벌금 및 시효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Chapter 1: 특수관계법인의 정의

특수관계법인은 자본, 경영 또는 지배력 및 지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관계사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TRC47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법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적어도 50 %의 자본/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두 회사는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TRC47 하에서 "관계/거래"는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상업적 관계 또는 재정적 관계로 정의됩니다.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관계로 인해, 해당 회사들 간의 특정 거래는 통제된 거래(Controlled Transaction)로 구분됩니다. 통제된 거래는 독립된 거래(Uncontrolled Transaction)와 비교됩니다.

회사가 다른 특수관계법인 및 제3자 모두와 유사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독립된 거래(회사가 제3자와 수행한 거래)가 비교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Chapter 2: TP 조정

TRD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비용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 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시장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위적인 소득이전이 의심되는 경우 조서관은 해당 거래의 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정으로 인한 추가 과세소득에 대한 추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중과세 방지협정 또는 상대국의 세제에 따라, 이전된 소득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손금인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응조정). 이러한 유형의 대응조정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계처리방식을 적용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hapter 3: TP 세무서식 및 제출기한

개정세법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에 수입이 2억 바트(6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보고의무를 가집니다. 해당 회사는 관계사들의 이름과 정보 및 특수관계거래금액을 명시하는 이전가격 세무서식(Transfer Pricing Disclosure Form, "TPD 세무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무서식은 회사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되며, 법인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회계연도 말부터 150일까지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5월 말까지입니다.

Chapter 4: TP 보고의무 및 입증책임(Burden of Proof)

TRD는 다국적 기업의 TP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세무조사 준비를 위해 지원 서류를 포함한 이전가격 보고서(Transfer Pricing Report, "TPR")를 제출하도록 특수관계법인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TRD는 해당 조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입증할 것을 촉구하며, 조사관은 다시 납세자에게 해당 내용을 입증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자신의 입장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한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Chapter 5: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TP 세무조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조사관이 세액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문서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납세자는 해당 기간 내에 특수관계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예정된 세무조사에 대해 조사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TP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최대 1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Chapter 6: 경정청구권

조사관이 특수관계법인의 수입이나 비용을 경정한 결과 특수관계법인가세액을 초과납부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해당 특수관계법인은 가장 최근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국세청장(TRD Director-General)이 정한 규정에 따라 조사관으로부터 경정청구 승인 통지서(notice of the amendment by TP audit officers)를 수령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초과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Chapter 7: 과태료 및 가산세

TRD는 문서화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00바트(원화 약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은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직전 사업연도 보고서를 구비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나, 추후 작성된 보고서는 TRD가 보고서 상 사용된 분석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TP 조정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일정율이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의 100~200%이며 월 1.5%의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자금액은 과소신고세액의 100%를 상한으로 합니다.

향후 일정

태국의 TP 개정세법은 OECD의 BEPS Actions를 반영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임시 TPD 세무서식 제출기한은 2020년 5월입니다. 해당 세무서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내외 특수관계법인, 상업 계약, 사업 관련 거래, 매출 및 서비스 가치, 대여금 및 이자율, 로열티, 그리고 기타 세부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ack to top](#)

[HMRC introduce Profit Diversion Compliance Facility](#)

영국 국세청("HMRC")이 우회수익 방지기구를 도입

HMRC는 2015년에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 Tax, "DPT")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의 BEPS Actions 8-10(이전가격의

분석결과가 가치사슬과 일관적이도록 규제)을 준수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는 납세자가 상당수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MRC는 우회수익 방지기구(Profit Diversion Compliance Facility)를 설립함으로써 납세자가 자신의 이전가격 정책에 필요한 변경사항을 적용(및 과거 미납부세액, 이자, 과태료를 납부)하고, 보다 신속하고 협조적인 방식으로 최신 동향에 적합한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회수익 방지기구란?

우회수익 방지기구는 고위험 이전가격 정책을 고수하거나 DPT 대상인 다국적 기업이 HMRC 가 관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관련 세제를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구는 주로 DPT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제조건은 아니며, DPT 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각 회사는 HMRC 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6개월 내로 향후 이전가격 정책 절차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납세자

아래와 같은 납세자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위험의 실제 관리주체에 대해 계약 상 위험 배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중요한 통합기능을 개별적인 저부가가치 기능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기능에 대해 따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 영국 내에서 중요한 지역적 기능(예: EMEA 본사)을 수행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며 최소한의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 영국 내에서 주요 판매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며 최소한의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 공급망을 통해 세율이 낮은 조세 관할구역(예: 물류 허브)의 기능이 제한적인 법인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
- 영국 내에서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R&D 서비스에 대해 원가가산 방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과 관련된 무형자산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HMRC 는 리스크가 큰 납세자들은 경고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히며, 해당 납세자는 우회수익 방지기구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납세자는 HMRC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고장을 받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도, HMRC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회수익 방지기구의 혜택

기업이 투명한 공시를 하고 적정세금을 납부하며 전적으로 협력한다면 HMRC 는 잠재적인 DPT 또는 법인세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합니다.

- 기업이 기구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기업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나 잠재적으로 DPT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를 낮추거나 부과하지 않으며, 기업이 부주의하게 행동할 경우(예: BEPS Actions 8-10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낮출 것이 고려됩니다.
- 해당 기구를 이용할 경우, 기업은 사전적으로 DPT 관련 이슈를 포함한 기타 다양한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DPT 통지서를 발행하거나 세무 이슈평가를 포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HMRC 세무조사 전에 사전적으로 이슈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속화된 절차를 통해 과거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고 미래 우회수익에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Italy Courts Controversy With Adoption of Digital-Revenue Tax](#)

이탈리아, 디지털 소득세 채택 찬반 논란

이탈리아의 2019년 예산안 중 국회위원이 새롭게 승인한 디지털 소득세로 인하여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형 기술업체들은 이탈리아 정부에 수십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의 디지털 소득세는 글로벌 연간 수익이 7억 5천만 유로 및 이탈리아 내에서 제공된 디지털 서비스 수익이 550만 유로 이상 발생하는 회사의 온라인 광고, 온라인 판매 및 데이터 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됩니다.

KPMG 이탈리아의 세무 파트너인 Davide Morabito에 의하면 해당 법은 12월 30일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2018년 3월 도입되었으나 2018년 말에 중지가 되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디지털 소득세 도입 관련 제안과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해당법이 예산법에 준거하여 4월까지 통과된다면 60일 후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Morabito는 추후 조세 부담은 해당법의 세부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orabito는 디지털 소득세 채택이 얼마나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새로운 디지털 소득세는 외국 대형 기술업체들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추후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Morabito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Morabito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기기가 이탈리아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공시된 수치에 따르면, 디지털 소득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술 업체들은 납세 고지서의 세액이 수십만 달러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라노 상공회의소에 제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 페이스북 사업의 경우 2017년 약 1,110만 유로(약 1,260만 달러)의 수익을 신고하였으며, 약 12만 유로(약 13.7만 달러) 혹은 1.1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디지털 소득세 지속 가능성 여부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 Andersen Tax & Legal 세무 및 법무부 관리 파트너인 Francesco Marconi는 "이탈리아의 디지털 소득세는 견실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나 성급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Marconi는 1월 7일 인터뷰에서 “디지털 소득세법의 개념은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Marconi는 “이익창출이 발생하는 경우 정당하게 과세를 하는 취지는 좋으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새로운 과세체계가 완벽하게 시행이 되기까지는 디지털 소득세는 일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Marconi는 이탈리아의 디지털 소득세는 브뤼셀과의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에 있어 신속한 해결방안으로 보이며, 해당 세제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막론하고 이탈리아는 1억5천만 유로(약1억7천 달러) 가량을 2019년 예산으로 추가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Marconi는 “현 시점에서 이탈리아 디지털 소득세는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법을 인용한 처벌에 대한 평가 및 합동 책임 제도가 반영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이슈

Marconi와 Morabito는 디지털 소득세법은 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이중과세 조약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탈리아의 일반적인 종합과세제도에 역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여러 기업들이 현지 기업이 해외 공급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지불 의무가 발생하는 연대책임 규정을 철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는 예산안이 승인이 되기도 이전에 이탈리아가 디지털 소득세 관련하여 실행 가능한 해결안을 찾는 과정에서 대형 기술업체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비난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소재 미국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인 Simone Crolla는 12월 20일 성명을 통하여 유럽의 법률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소득세와 수반된 위험은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지름길이라 하였으며, 최종적인 해결책은 디지털 기업들이 세금 규제에 대한 옵션을 함께 논의해야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Back to top](#)

[EU: Tax rulings granted by Netherlands to multinational corporation](#)

EU: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관련 조세 판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19년 1월 10일 네덜란드가 다국적 기업에 부여한 조세 판결이 EU state Aid Rule("국가 보조 규정")를 위반하여 "경쟁사보다 불공정한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조세 판결은 두 네덜란드 기업의 지적재산권 이용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 액수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0일 EC 에서 발표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공식적인 조사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납세자 그룹에 대한 네덜란드의 조세 판결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해당 조세 판결 관련 두 납세자 그룹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두 사업법인은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EMEA 지역")에서 제품을 개발 및 판매를 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두 기업은 EMEA 지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습니다.
- 두 기업은 세금 공제 대상 로열티 지급의 대가로 두 납세자 그룹(현 네덜란드 소재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그룹의 기업구조는 EU 국가 보조 규정 관련 소관 밖에 있습니다.
- 네덜란드 과세 당국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5건의 조세 판결을 내렸으며, 이 중 2건의 조세 판결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두 네덜란드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로열티 산출방법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결과로 네덜란드 기업들은 매출에 근거하여 제한된 수준의 영업 마진에 대해서만 과세를 받았습니다.

EC 는 “조세 판결에 의해 승인된 로열티 지급은 납세자 그룹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EC 는 “해당 로열티 지급액은 시장 조건에 따라 협상을 하는 독립적인 기업들이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합의하는 가격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기능에 대한 예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네덜란드 기업들은 1,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개발, 관리 및 이용에 관련된 기능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로열티를 수취하는 두 납세자 그룹은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경제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EC 의 조사는 로열티 지급을 승인하는 네덜란드의 조세 판결이 2006년 이후 두 네덜란드 사업 법인의 과세 기준을 과도하게 축소하였는지, 혹은 네덜란드가 시장 조건에 따라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다른 독립 기업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그룹에 차별된 혜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집중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위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해당 국가 보조는 불법에 해당될 것입니다.

EC 의 조사가 시작하면 네덜란드 및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해당 의견은 조사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